신탁계약서 변경 대비표

칸서스자산운용㈜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하베스트 멀티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2. 신탁계약서 변경 시행일

- 2010.09.06

3. 변경사유

- 기존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조항의 변경

4. 신탁계약서 변경 내용

현 행	변 경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②(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래스 A1 수익증권 : 적립식 투자자,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2. 클래스 A2 수익증권 : 클래스 A1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3. 클래스 A3 수익증권 : 클래스 A2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4. 클래스 A4 수익증권 : 클래스 A3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5. 클래스 A5 수익증권 : 클래스 A4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6. 클래스 B 수익증권 : 임의식·거치식 투자자, 납입금액 100만원 이상 7. 클래스 C 수익증권 : 임의식·거치식 투자자, 납입금액 5억원 이상 ④(생략)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래스 A 수익증권 : 적립식 투자자,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2. 클래스 A3 수익증권 : 클래스 A3 수익증권 보유자 3. 클래스 A5 수익증권 : 클래스 A5 수익증권 보유자 4. 클래스 A7 수익증권 : 클래스 A7 수익증권 보유자 5. 클래스 B 수익증권 : 임의식·거치식 투자자, 납입금액 100만원 이상 6. 클래스 C 수익증권 : 임의식·거치식 투자자, 납입금액 5억원 이상 ④(현행과 같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

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클래스 A1 수익증권 2. 클래스 A2 수익증권 3. 클래스 A3 수익증권 4. 클래스 A4 수익증권 5. 클래스 A5 수익증권 6. 클래스 B 수익증권 7. 클래스 C 수익증권 ②~⑤(생략)	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클래스 A 수익증권 2. 클래스 A3 수익증권 3. 클래스 A5 수익증권 4. 클래스 A7 수익증권 5. 클래스 B 수익증권 6. 클래스 C 수익증권 ②~⑤(현행과 같음)
제28-1조(수익증권의 전환)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A1 클래스 수익증권에 한한다. 1. A1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A2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2. A2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A3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3. A3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A4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4. A4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A5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⑤(생략)	**제28-1조(수익증권의 전환)**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A 클래스 수익증권에 한한다. 1. A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A3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2. A3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A5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3. A5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A7 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⑤(현행과 같음)
제39조(보수) 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클래스 A1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0	**제39조(보수)**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클래스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2. 클래스 A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3.03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3. 클래스 A3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1.0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4. 클래스 A4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9.08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5. 클래스 A5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1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6. 클래스 B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1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7. 클래스 C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1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2. 클래스 A3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2.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3. 클래스 A5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4. 클래스 A7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1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5. 클래스 B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1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6. 클래스 C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4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1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6
제40조(선취판매수수료) ①~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클래스 A1 수익증권, 클래스 A2 수익증권, 클래스	**제40조(선취판매수수료)**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클래스 A 수익증권, 클래스 A3 수익증권, 클래스 A5

A3 수익증권, 클래스 A4 수익증권, 클래스 A5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수익증권, 클래스 A7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41조(환매수수료) ①클래스 A1 수익증권, 클래스 A2 수익증권, 클래스 A3 수익증권, 클래스 A4 수익증권, 클래스 A5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③(생략)	**제41조(환매수수료)** ①클래스 A 수익증권, 클래스 A3 수익증권, 클래스 A5 수익증권, 클래스 A7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②~④(생략)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④(현행과 같음)